

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관개정안 보고

□ 추진근거

- 행정자치부 「지방 출자·출연기관 예산집행 지침」 (행정자치부 재정관리과, 2015.2.26.)
- 서울특별시 「출자·출연기관 운영관련 제도 개선계획」 (공기업담당관-4799, 2016.4.29.)
-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

□ 개정사유

- 「출자·출연기관 운영관련 제도 개선계획」에 따라 당연직 이사 운영제도에 관한 정관 내용 개정

□ 주요골자

- 제16조(임직원의 보수)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지급 시 업무 관련성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 금지 구문 삭제

● 추진목적

- 당연직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제고로 市-기관간 소통·협력 증대
- 기관 비상임이사(당연직이사 포함)의 이사회 참석수당 현실화

● 지급대상 : 이사회에 참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당연직 이사

● 지급기준 금액 : 300천원/회

● 조치사항 : 규정 정비 등

- 당연직이사의 이사회 참석수당 지급금지 규정 정비 및 이사회 운영경비 예산 재조정 등

□ 개정절차 및 추진일정

- 시의회 상임위원회 보고 : 2016년 6월 중
- 서울의료원 이사회 의결 : 2016년 7월 중
- 이사회 결과에 대한 서울시장 승인 : 2016년 7월 중
-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 완료 : 2016년 7월 중

붙임1. 신·구조문 대비표

작성자

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☎2133-7505 시립병원운영팀장 : 이상화 ☎7516 담당 : 이병철 ☎7518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
<p>제16조 (임직원의 보수) ① 의료원의 임원 및 직원은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보수와 기타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받는다.</p> <p>② 비상임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. 다만, 예산의 범위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u>이 경우 업무 관련성 있는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③ 퇴직금관리는 보수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/p>	<p>제16조 (임직원의 보수) ① 의료원의 임원 및 직원은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보수와 기타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받는다.</p> <p>② 비상임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. 다만, 예산의 범위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삭제></p> <p>③ 퇴직금관리는 보수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/p>